

부산고등법원 2015. 1. 8 선고 2014나51435 판결 [상가임차권확인]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15. 1. 8 선고 2014나5143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3가합684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부산시설공단

변론종결 2014. 12. 4.

판결 선고 2015. 1. 8.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3가합684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3.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천대엽

판사이혁

판사이준영